

수기명령신청서

사 건 2000가합0000 소유권이전등기

원 고 000

피 고 ◇◇◇

위 사건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■■■에게 다음과 같이 손수 쓰기 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.

- 1. 손수 써야 할 문서의 표시 을 제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
- 2. 손수 쓰기 할 것을 구하는 문자 위 매매계약의 입회인 ■■■
- 3. 위 문자를 흑색볼펜으로 손수 쓰기 하도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0. 0. 0.

위 피고 〈〉〉〉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제○민사부 귀중

제출법원	수소법원	제출부수	신청서 1부 ****
손수 써야 하는 의무	증명할 수 있음(민사소송 · 대조하는 데에 적당한 목 쓰도록 명할 수 있음. 2 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	당법 제359조). 필적이 없는 때에 상대방이 정당한 서의 진정여부에	는 필적 또는 인영(印影)을 대조하여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문자를 손수이유 없이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관한 확인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들어 손수 쓴 때에도 또한 같음(민사소
기 타	필적감정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임.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증거